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
------------	-----

제출년월일 : 2000년 6월 일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부동산증개업법이 개정 (2000.1.28 법률 제6236호, 시행 2000.7.29)되면서, 종전에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증개사무소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를 동법 제37조의3 각호의 1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부동산증개사무소의개설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함 (안[별표])

#### 가.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① 법인인 : 1건당 20,000원
- ② 공인증개사 : 1건당 5,000원

#### 나. 증개사무소등록증의 제교부 : 1건당 500원

#### 다. 법인인 증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건당 1,000원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도내 각시별수수료대비표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란중 “⑦”란 다음에 “⑧”란 내지 “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⑧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법인	1건	20,000원	
나. 공인증개사	”	5,000원	
⑨ 증개사무소등록증의 제교부	1건	500원	
⑩ 법인인 증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구 分	기준	요 액	비 고	구 分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1~12 <생략>				(증명) 1~12 <현행과같음>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⑦ <생략> <u>&lt;신 설&gt;</u>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⑦ <현행과같음> ⑧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범      이      1건 <u>20.000</u> 나. 공인중개사      1건 <u>5.000</u> ⑨ 증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u>500</u> ⑩ 법인인 증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u>1.000</u>			
<u>&lt;신 설&gt;</u>				2~8 <생략>			

## 도내 각시별 수수료 대비표

2000년 7월 25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시 별	수 수 료				비 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증개사무소등록증 의 재교부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법 인	공인중개사			
계					
포항시		미 규	"	정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20,000	5,000	500	1,000	개정증
영천시	20,000	5,000	500	1,000	"
상주시		미 규	"	정	
문경시			"		
경산시			"		
종 전	20,000	5,000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총부동산중개업자회 규약(인증서)부수증명
		이 하 빈	간		

## 관 련 법령 (발췌)

【부동산증개업법】

종 전	현 행 (개정 2000.1.28)
<p><u>제4조(증개업의 등록) ① 법인 또는 공인증개사로서 증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증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하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제11조(증개사무소의 설치등) ①증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증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증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증</u></p>	<p><u>제4조(증개업의 등록 등) ①증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증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증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u></p> <p><u>②등록관청이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u>③증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u></p> <p><u>제11조(증개사무소의 설치등) ①-----</u></p> <p>-----</p> <p>-----</p> <p>-----</p>

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생 략)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  
-----  
-----  
---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 ⑤ (종전 제4항과 같음)

제37조의3(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제교부를 신청

<p><u>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u></p> <p><u>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u></p> <p><u>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u></p> <p><u>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u></p> <p><u>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u></p>	<p><u>하는 자</u></p> <p><u>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u></p> <p><u>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개정 2000.1.28]</p>
--	--

### 입·법 예고 결과

- 조례명 : 영주시체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44호(2000년 7월 31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7월 31일 ~ 2000년 8월 20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30호
- 의 안 명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2. 제안이유

부동산증개업법이 개정(2000. 1. 28 법률제6236호, 시행 2000. 7. 29)되면서, 종전에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증개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동법제37조의3 각호의 1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부동산증개사무소의 개설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함(안[별표])

#### 가.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① 법 인 : 1건당 20,000원
- ② 공인증개사 : 1건당 5,000원

#### 나. 증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1건당 500원

#### 다. 법인인 증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건당 1,000원

### 4. 검토의견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부동산증개업법이 2000. 1. 28 법률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부동산증개업법제37조의3 각호의 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하는 내용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법인인 : 1건당 20,000원

② 공인중개사 : 1건당 5,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1건당 500원

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건당 1,000원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